

해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대한 해설

발표 일시 : 2026-05-26 17:20 문서 출처 : 해관총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를 최적화하고 수출입 화장품 산업의 고
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수출입 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
법』(이하 『방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2026년 5월, 해관총서는 『중화인
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
을 공포하였으며,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해관계인 및 사회 각계가
이번 규장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개정의 배경 및 필요성

『방법』은 2012년 시행 이래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 규범화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중국 수출입 화장품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방법』의 관련 규정이
현재의 발전 최신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로, 『조례』가 화장품 관리 요건을 조정하였다. 해관 수출입 화장품 관
리의 주요 상위 법령 근거 중 하나인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범위·분류·주체
책임·감독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대폭적인 조정을 단행하였다. 둘째로, 해관이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한 다수의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다. 기관 개혁 이후 해
관은 수출입상품 검사 방식을 조정하였으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다수의 조
치를 시행하였다. 셋째로, 성숙한 실무 경험을 제도적 규범으로 격상할 필요성
이 있다. 수출입 화장품 업계의 발전 상황과 해관의 실제 감독관리 현황을 반
영하여, 규장에 리스크 관리·신용관리 제도를 연계함으로써 감독관리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개정의 주요 고려사항

첫째로, 상위 법령인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여 화장품의 정의·정보 기록·감독관리 책임 등을 조정하였다. 둘째로, 감독관리의 질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관 개혁 이래 업무 프로세스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며, 스마트 해관 건설을 심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셋째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촉진하여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 환경을 개선하였다.

3. 개정의 주요 내용

(1) 리스크 관리 이념 강화, 수출입 화장품 감독관리의 정밀성·유효성 향상

첫째로, 리스크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여, 해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험법』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로, 해관의 리스크 관리 규정과 연계하여, 수출입 화장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이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로, 검역 관련 관리 규정을 조정하여, 국내외에서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관이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2) 개혁 성과의 총괄 공고화, 기업 지원 및 혜택 강화

첫째로, 스마트 해관 건설을 심화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활용을 강화하여 해관 관리의 정보화·디지털화·지능화 수준을 향상시켰다. 둘째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화장품 수화인 및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해관의 등록 관리 요건을 삭제하였다. 셋째로, 검사 장소를 최적화하여, 업무 개혁 실무에 따라 수입화장품 검사 장소를 구항 해관에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목적지로 조정하는 한편, 수출 단계에서는 해관총서가 무역 편의의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넷째로, 지정 또는 인가된 장소 요건을 폐지하여, 검사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입 화장품을 해관이 지정 또는 인가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다섯째로, 검사 면제 수입화장품 샘플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검사' 목적으로 수입하는 비시용 샘플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3) 규장을 통한 상위 법령 요건의 이행 강화

『조례』의 화장품 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국가의 허가 관리 대상인 특수화장품 및 등록 관리 대상인 일반화장품은 수입 전에 허가 취득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최초 수입' 화장품에 대한 특별 관리 요건을 폐지하였다. 또한 수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는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과 자율을 실천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화장품 정보를 진실하고 완전하며 추적 가능하게 기록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정보 보존 기한을 조정하였다.

(작성 부서 : 법규사, 식품안전국)